#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76

발의연월일: 2025. 1. 21.

발 의 자:한민수・이학영・박민규

소병훈・김문수・황 희

박상혁 • 이건태 • 박용갑

이연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'방송'과 '전송'의 개념을 구분하고, 방송사업자가 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미디어산업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나 IPTV, VOD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나, 방송사업자가 OTT 등을 통해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제1항 본문 중 "방송하는"을 "방송·전송하는"으로 한다. 제82조제1항 본문 중 "방송하는"을 "방송·전송하는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75조(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제75조(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) ① 방송사업자가 대한 보상) ① -----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-----방송·전송하는----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실 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 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 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82조(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 제82조(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 에 대한 보상) ① 방송사업자 에 대한 보상) ① -----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 송·전송하는-----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 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. 다만, 음반제작자 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 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 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